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2021. 7. 15 제정
2022. 7. 1 일부개정
2023. 3. 1 일부개정
<연구지원1팀>

제1장 총론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 40조 제7항에 따라 고려대학교(이하 “본교”라 함) 소속 학생연구자가 연구와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대학문화 정착과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제도의 체계적인 운영 및 학생연구자의 인권 및 권익보호 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연구자”이라 함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하고 있거나 신규 또는 후속 연구개발과제를 준비하고 있는 학사·석사·박사 학위과정생(석·박통합과정 및 수료생 중 본교의 연구생으로 등록한 수료재학생)을 말한다.
2. “통합관리계정”이라 함은 학생인건비를 적립하여 지속 사용하도록 연구책임자 단위로 설정하는 별도의 계정을 말한다.
3. “연구책임자”이라 함은 통합관리계정의 책임자를 말한다.
4. “연구책임자 등”이라 함은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연구책임자 및 학생연구자 포함)를 말한다.
5. “관리기관”이라 함은 본교 및 산학협력단을 말한다.
6. “부당회수”이라 함은 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에게 학생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학생연구자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회수하여 관리 또는 사용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본교의 학생연구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관리기관의 업무)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생연구자의 학업·연구 활동 및 처우 보장, 인권 보호 및 관리·감독 등 학생연구자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2. 학생인건비 지급을 위한 통합관리계정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학생인건비 수입·지출·잔액 관리에 관한 사항
4. 학생인건비 지급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학생연구자의 연구참여확약서 체결 및 준수에 관한 사항
6. 학생연구자의 상해·사망에 대비하는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
7. 학생인건비 부당회수(미지급 포함) 방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학생연구자 제도운영을 위해 총장 및 산학협력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연구책임자의 의무) 연구책임자는 신의와 성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이행하여야 한다.

1. 학생연구자와 협의하여 연구참여 확약 체결

2. 학생연구자 지도
3. 학생연구자에 대한 학생인건비·연구수당 지급 및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권리 보장
4. 학생인건비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
5. 연구윤리 및 연구보안 준수
6. 위 각 호의 부수되는 사항

제6조(학생연구자의 의무) 학생연구자는 신의와 성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연구책임자의 지도에 따라 연구참여확약서에서 정한 업무 수행
2. 연구를 수행할 때에는 연구윤리 및 보안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특이사항은 연구책임자에게 보고
3. 학적변동, 업무수행 불가능, 취업 및 학생인건비 외 소득 발생 등 변경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연구책임자 및 관리기관과 사전 협의 및 변경사항 통보
4. 위 각 호의 부수되는 사항

제2장 학생연구자의 학업·연구 활동 보장

제7조(연구실 운영) 연구책임자(지도교수)는 연구실 내 학생연구자의 처우 및 안전 업무량 등 연구환경에 대한 세부운영기준을 마련·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연간 활용계획 수립)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 운영규모, 구체적 역할 및 처우 등을 포함한 학생연구자 연간활용 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책임자는 전년도 활용인원,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및 학생인건비 재원 등을 고려하여 적정 학생연구자가 연구에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연구참여확약 체결) 산학협력단장 및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 활용계획에 따라 학생연구자와 협의를 거쳐 학기(또는 학년) 단위로 연구참여확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및 학생인건비 재원 등을 고려하여 적정 학생연구자가 연구에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업무범위 제한)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를 연구활동과 무관한 업무나 사적 업무에 동원하지 아니한다.

제11조(학업·연구권 보장) 연구책임자가 학생연구자를 활용할 때에는 학생연구자의 학업 및 자율적 연구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하여야 한다.

제12조(부당업무 거부권 보장) 학생연구자는 연구활동과 무관한 업무 등 부당업무를 거부할 권리를 가지며, 연구책임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학생연구자의 처우

제13조(학생인건비 지급기준) ① 학생인건비는 계상률 100%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23. 3. 1.>

1. 학사과정 : 월 1,300,000원
2. 석사과정 : 월 2,200,000원
3. 박사과정(석·박통합과정) : 월 3,000,000원

제14조(학생연구자별 학생인건비 산정) ① 관리기관은 학생인건비를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기관내 학생인건비 산정 기준 마련, 균등지급 체계 마련, 학생인건비 재원 확대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정도에 따라 학생인건비를 산정하며, 연구성과에 따라 학생연구자의 연구수당·기술료를 산정하는 등 연구 참여정도와 연구성과가 분리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학생인건비통합관리제도 운영

제15조(학생인건비 지급) ①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와 체결한 연구참여확약서를 산학협력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은 연구참여확약서에 따라 해당 통합관리계정에서 매월 학생연구자의 본인 명의 계좌로 학생인건비를 이체하여야 한다.

③ 학생연구자의 계좌는 1인 1계좌로 한다.

제16조(학생인건비 관리) 산학협력단은 학생인건비의 수입·지출·잔액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고, 연구책임자 및 학생연구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여야 한다.

제17조(자체점검) ① 산학협력단은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별지 제9호 서식을 활용하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자체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조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장 학생연구자 인권 및 권익보호

제18조(인격권 보장)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에게 폭언·폭행·성추행·성희롱 등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건강과 휴식 보장)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가 건강하고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절한 휴식 제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안전 보장) 관리기관은 학생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연구자의 상해·사망에 대비하여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거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1조(학생인건비 부당회수 금지) ① 누구든지 학생인건비를 학생연구자에게 지급 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학생연구자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회수하여 관리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관리기관은 학생인건비의 부당회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재정운영 정보 공개) 학생연구자는 본인이 참여하는 통합관리계정의 연구과제 수행 현황 등의 정보를 산학협력단 및 연구책임자에게 요청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산학협력단장 및 연구책임자는 해당 정보를 제공 할 수 있다. 다만, 타 학생연구자의 지출 내역 등 개인정보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23조(고충·상담 창구운영) ① 관리기관은 연구참여확약서의 조건 위반, 학생연구자의 권리 침해 등 학생연구자가 공식적으로 소통 할 수 있는 온라인 신문고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학생연구자로부터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 받은 경우에는 신속히 해결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처벌·제재)① 학생연구자는 제 23조 제 1항에 따라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연구책임자 등의 시정이 없거나 미비할 경우 관련 부서에 재조사를 요청 할 수 있다.

② 연구책임자 및 관련 부서에서는 조사결과에 따라 해당 문제가 신속하게 해결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하며, 관리기관이 정한 규정에 따라 관련 부서에 해결을 요청 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2. (구 학교규정의 폐지) 이 규정의 시행에 따라 「산학협력단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지침」은 2021년 7월 15일자로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1조, 제2조, 제4조 내지 제6조, 제9조, 제17조, 제19조, 제21조, 제22조, 제24조 개정)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13조 개정)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자체점검표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관련 점검사항

※ 점검 시 유의사항: 항목별 구체적 조항 및 실천방안 포함 여부 점검

구분	평가 항목	평가결과 (○/X)
권익 보호	학생연구자의 학업·연구개발활동 보장, 처우 개선, 인권·권익 보호 및 관리·감독 등에 관한 사항 포함	
전산시스템 운영	제86조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포함	
계정 설정 및 관리	제87조에 따른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포함	
수입·지출·잔액 관리	학생인건비 수입·지출·잔액 관리에 관한 사항 포함	
계상기준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에 관한 사항 포함	
연구참여확약서	제91조제2항·제3항에 따른 연구참여확약서 작성·변경에 관한 사항 포함 (연구참여확약서 변경 사유 및 기타 확약사항의 상위 규정 준수 여부 등)	
부당회수 방지 노력	제92조에 따른 학생인건비부당회수 방지에 관한 사항 포함 (부당회수 방지 계획 수립, 홍보, 윤리교육 등 실적)	
상해·사망 대비 보험 보장	학생연구자의 상해·사망에 대비하는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 포함	

전산시스템 점검사항

구분	평가 항목	평가 내용	평가결과 (○/X)
1.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학생인건비 총액관리	해당기관의 학생인건비의 수입·지출·잔액 현황 및 연도별 수입총액 대비 잔액 비율 관리	
	학생인건비 계정설정	기관·연구책임자 계정 설정 및 수입(과제별)·지출(계정별) 현황 관리	
	학생인건비 지급대상관리	계정에 속한 학생연구자의 학적 및 인사시스템 연동 (학생인건비 지급대상 확인)	
	학생인건비 지급·관리	적절한 학생인건비 지급 절차 구현(학생연구자 지원규정에 따른 연구참여확약서 작성, 연구관리부서의 학생인건비 지급 승인 및 지급, 변경내역)	
2. 학생인건비 지급·관리	학생연구자 지급계좌관리 및 지급정보제공	1인1계좌 등록관리 지급기간의 지급예정정보(지급계좌정보, 지급예정일), 지급내역 학생 직접 확인	
	학생연구자 지급총액관리	학생연구자의 계정별 지급총액 관리(기관별 계상기준 초과여부)	
	학생인건비 지급현황관리	계정별 학생인건비 지급 내역 확인 및 지급내역 대상 학생 직접 확인	
	시스템연동	통합관리기관의 전산시스템과 범부처연구비통합관리 시스템(통합이지바로) 상호연계	